【판시사항】

- [1]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/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(원칙적 적극)
- [2]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,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
【참조조문】

[1] 민법 제393조, 제396조, 제763조 [2] 민법 제393조, 제763조

 \boxtimes

【참조판례】

[1]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8다1576 판결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0다79947 판결(공2012상, 259)[2]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41578 판결(공1998상, 291)

 \boxtimes

[전 문]

【원고, 상고인】원고 (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해)

【원고승계참가인】국민연금공단

【피고, 피상고인】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)

【피고보조참가인】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

【원심판결】서울고법 2012. 3. 30. 선고 2010나59853 판결

 \boxtimes

【주 문】

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 \boxtimes

[이 유]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판단한다.

 \boxtimes

1.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

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,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,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.

X

2. 책임제한비율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

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,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·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,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(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(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).

X

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련된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%로 제한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, 거기에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.

X

- 3. 하지장해율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
- 가. 원심은,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, 감정 당시 원고의 좌측 하지 부분의 각 장해율 소견은 직업계수 6을 적용할 경우 고관절부 40%, 슬관절부 25%, 족관절부 36%가 되는데, 이러한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2%가 되어 좌측 하지 부분의 각 장해율의 합산이 고관절 이하 절단보다 높다는 이유로,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좌측 하지 고관절 이하 절단에 해당하는 절단-III-1항, 직업계수 6(일반도시노동자)에서 정한 48%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다.

 \boxtimes

나.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.

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(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41578 판결 등 참조).

 \boxtimes

따라서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좌측 하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좌측 하지고관절 이하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.

 \boxtimes

- 4. 인공고관절 수술비용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
- 가. 원심은, 원고의 하지장해율을 고관절 인공관절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관절 이하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실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므로, 고관절의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인공관절술 비용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.

 \boxtimes

- 나.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.
- (1)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하지장해율을 고관절 이하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,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,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정형외과 의사는 그 신체감정서에서 "향후 좌측 고관절부 염증 소견 후 인공관절술이 요할 것으로 보이고, 이후 슬관절부 및 족관절부 재활치료 또한 상당기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 장해적용은 고관절부 인공관절술을 시행하고 재활치료 후에는 장해를 재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"는 의견을 밝힌 사실, 원고도 인공 고관절수술을 원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, 원고의 좌측 하지장해는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인공 고관절수술을 시행한 후 슬관절부와 족관절부에 대한 재활치료가 가능하고, 그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, 그 경우 위 수술비용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.

 \boxtimes

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하지 장해율을 고관절 이하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.

 \boxtimes

(2) 다만, 인공고관절 수술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이상, 원심으로서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시행하면 원고의 하지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그에 근거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.

 \boxtimes

5. 결론

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 \boxtimes